

2020년 제2회 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-0102호

2020년 제2회 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

『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』 제1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0년 제2회 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0일
국가기술표준원장

『신기술(NET)인증』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,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
1. 신청자격

-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
2. 신청대상
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"실증화시험"이라 한다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,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-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- ※ **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(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)되었을 경우, 신청대상에서 제외**

3. 신청접수

- 접수기간: 2020. 4. 22(수) ~ 2020. 5. 22(금) 18:00 까지

구분	접수기간
제2회	2020. 4. 22(수) ~ 2020. 5. 22(금)
제3회	2020. 7. 14(화) ~ 2020. 8. 14(금)

- 접수절차

- ① 온라인 접수 후[www.netmark.or.kr]
- ② 우편(또는 방문) 제출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※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(또는 연장 신청서)(온라인 작성·출력 후 대표 날인)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
 - ※ 온라인 접수(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)와 우편(방문) 제출(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)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, 제출서류(원본포함)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

- 2020년 제2회 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

구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(온라인 접수)	① 신기술(NET)인증 신청서 (온라인 작성 후 출력, 원본 우편(방문)제출 필수)	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
	②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
참고사항	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의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(특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, 요약부분까지 첨부) ④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(해당시 원본 필수제출, 우편(방문) 접수)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(ISO9001, IATF16949 등)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인증서류(해당시 필수제출) (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, 중·소기업확인서 등)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(해당시 필수제출)	
	○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"기술명"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○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, 청구항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○ 공동개발 기술(공동특허 포함)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"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(제품)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" (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)를 작성·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○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(기관당 최소 30% 이상) ○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○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	

○ 2020년 제2회 신기술(NET)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

구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(온라인 접수)	① 신기술(NET)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(온라인 작성 후 출력, 원본 우편(방문)제출 필수)	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
	②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별지서식
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(온라인 접수)	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(특허자료 제출시 원부와 청구항, 요약부분까지 첨부)	
	④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(해당시 원본 필수제출, 우편(방문) 접수)	
	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(ISO9001, IATF16949 등)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	
	⑥ 사업자등록증 사본	
	⑦ 중소기업 입증서류(해당시 필수제출) (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, 중·소기업확인서 등)	
	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(해당시 필수제출)	
참고사항	○ 신청대상 :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○ 신청제외 :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관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○ 기 타 :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	

○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

- 제출서류: 신기술(NET)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(파일업로드)
※ 신청서(또는 연장 신청서)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(우편(방문) 접수)
- 신청서식은 [www.netmark.or.kr→정보센터→서식자료실]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

4. 심사수수료 납부

○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

- 1차심사(서류면접): 20만원(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)
- 2차심사(현장심사): 50만원(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, 개별통보)

5. 서류제출 및 문의처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

- 주소 (06744)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
- 전화 02)3460-9022~4, 9190 팩스 02)3460-9029

- 끝 -